소 송 업 무 처 리 규 정

목 차

제1장 총칙1
제1조 목적]
제2조 다른 법령 및 제규정과의 관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소송사무의 처리절차1
제4조 소송의 수행]
제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2
제6조 소송보조자2
제7조 강제집행보전조치
제8조 소송진행 중의 조치
제9조 상소의 포기
제10조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
제10조의2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
제10조의3 변호사비용의 회수
제3장 소송비용4
제11조 착수금
제12조 승소보수금
제13조 기타 소송비용
제4장 법률고문5
제14조 법률고문의 위촉
제15조 자문료
제16조 법률자문 절차
제5장 청렴성 검증6

부	츼		7
제	22조	승소격려금	7
제6	장 보	칙	7
제	21조	소송 운영현황 공개	7
제	20조	소송위임 업무량 배정	6
제	19조	수임제한	6
제	18조	이해충돌방지	6
제	17조	비위행위자 선임제한	6

소송업무처리규정

2006. 9.13 제정 (규정 제776호) 2008. 4.30 개정 (규정 제826호) 2008.11.10 직제시행세칙 개정 (규정 제841호), 2013.10.16 개정 (규정 제1007호) 2017.12. 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 (규정 제1160호), 2020.02.03 개정 (규정 제1266호) 2020.08.31 개정 (규정 제1288호) 2022.02.08 개정 (규정 제1367호) 2023.05.10 개정 (규정 제1424호) 2024.12.31. 개정 (규정 제1494호)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처리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4., 2022.2.8>
- 제2조 (다른 법령 및 제규정과의 관계)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령 및 한국교통안전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규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2.8>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8>
 - 1. "소송"이라 함은 공단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사건, 행정사건, 비송사건, 형사소송(공단의 임·직원이 공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 또는 피소된 형사사건을 포함한다) 등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 2.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공단 직원 중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자이거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 또는 「변 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개정 2022.2.8>
 - 3. "소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소송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4.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소송의 지휘·감독 및 교육, 법률고문의 운용 등 공단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2.2.8>

제2장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 제4조 (소송의 수행)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공단이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소장, 사건경위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소송보조자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제소 또는 응소의뢰를 해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0.8.31., 2022.2.8.>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판단하여 소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31>
 - ③ 제2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소·응소·소송 진행 상황(변론기일·선고기일·소송결과)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1>
- 제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사건(소액사건 포함), 손실보상 관련 소송 기타 난이도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단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한다. 다만, 공개모집 인원이 2명이 되지 않아 선임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3.10.16>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 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8>
 - 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2. 구상금 청구 또는 채권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
 - 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신청 또는 소송자료 제출에 시간이 없는 등 긴급한 경우
 - 4. 그 밖에 보안 등의 사유로 공모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8.31>
 - ④ 공개모집 또는 추천에 의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임제안서를 별표2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 포함 5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소송업무 담당 본부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3.10.16., 2022.2.8.>
 - ⑤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2013.10.16., 2022.2.8.>
- 제6조 (소송보조자) ①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소송보조자로 지정하여 소송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22.2.8.>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보조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4.30>
-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 수집 · 작성 및 제출
- 2. 강제집행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파악
- 3.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시 변론기일 및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 출석 및 입회 <신설 2020.8.31>
- 4.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소송보조자는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신설 2020.8.31>
- 제7조 (강제집행보전조치)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 (소송진행 중의 조치)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판결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 및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 1.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 2. 상소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상소의 비용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
- 제10조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종국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할법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확정증명원을 교부받아 소송을 종결 처리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22.02.08.]
- 제10조의2 (확정사건의 처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종국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판결 주문에 따른 채무의 이행, 채권의 보전·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0.>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으로 종국판결이 확정된 경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하고 제10조의3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05.10.> [본조신설 2022.2.8]
- 제10조의3 (변호사비용의 회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의 강제집행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5.10.>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거나 일부만 회수할 수 있다.
- 1. 회수할 금액이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 2.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의 경우로 한정)
- 3. 상대방이 사상(死傷), 실종, 행방불명 등 회수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이사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송비용의 미회수 또는 일부 회수를 결정할 경우,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1.>
- ⑤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소송상대방이거나 소송상대방과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은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2.08.]

[제목개정 2023.05.10.]

제3장 소송비용

- 제11조 (착수금) ① 변호사의 착수금은 소송물가액을 기초로 하여 별표1의 착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2.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착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 1. 판결결과에 따라 공단의 경영이나 사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 2. 통상의 사건에 비하여 쟁점사항이 많아 사건의 실체파악, 증거서류의 검토,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작성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건
 - 3. 사안이 난해하여 고도의 법률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
 - ③ 소송 진행 중 소송물가액이 확장될 경우에는 확장된 부분을 최초 소송물가액에 합산 하여 착수금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소송물가액·경제적 이익 등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

- (행정·형사소송사건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착수금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 ⑤ 본안 사건에 부수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1 이내에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2조 (중소보수금) 본안 사건이 전부 승소된 경우에는 착수금의 2배 이내에서 승소보수 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승소된 경우에는 승소의 정도, 소송수행의 난이도 기타 소송결과가 공단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승소의 비율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기타 소송비용) ①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라 위임보수 이외에 민사소송법, 민사소 송비용법, 민사소송등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기타 소송수행상 소요된 비용 등은 그 실비를 지급한다.
 - ②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등 외부인에게 공단의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31>
 - ③ 삭제 <2020.8.31.>

제4장 법률고문

- 제14조 (법률고문의 위촉) ① 공단은 업무전반에 관한 소송수행 또는 법률상의 자문에 응할 약간명의 유급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0.16>
 - ② 법률고문은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조유사직역의 전문자격사 중에서 공단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게시판 등에 7일이상 공개 모집한다. 다만, 공개모집 인원이 2명이 되지 않아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2022.2.8., 2023.05.10.>
 - ③ 제2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제출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별표3의 전문성, 성실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배수이내로 추천하며 추천인원 중에서 이사장이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0.8.31, 2022.2.8>
 - ④ 평가위원은 소송업무 담당 본부장이 선정한 직원 등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31, 2022.2.8>
 - ⑤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을 받은 부서를 대상으로 매년 말 실시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만족도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31., 2022.2.8., 2023.05.10.>
 - ⑥ 삭제 <2020.8.31.>
 - (7) 제5항에 따른 재위촉은 최대 3회에 한한다. <신설 2024.12.31.>

- 제15조 (자문료)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고문보수금(이를 "일반 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 ② 특별한 사안의 자문에 대하여는 소요된 실제 시간당 5만원의 자문비용(이를 "특별자 문료"라 한다)을 법률고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법률자문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관부서 에 문서로 법률자문의뢰를 요청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에 문서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자문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청렴성 검증

- 제17조 (비위행위자 선임제한) ① 소송대리인 및 법률고문 선임 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내역 전력을 조회하여 선임일 기준으로 징계전력이 드러난 경우 선임을 취소하며,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 시에는 법무법인 소속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제한한다. <개정 2022.2.8>
 - ②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고문이 선임된 후 재임 중 범죄행위로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선임을 취소한다. <개정 2022.2.8>

[본조 신설 2013.10.16]

- 제18조 (이해충돌방지) 소송대리인 및 법률고문으로 선임될 경우 소송대리인과 법률고문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28>
 -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금지
 - 2. 공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 4. 미공개 정보이용금지,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본조 신설 2013.10.16]

- 제19조 (수임제한) 공단에서 퇴직한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1년 이내에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을 위임하지 못한다. 다만, 경쟁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2022.2.8>
- 제20조 (소송위임 업무량 배정) 고문변호사가 2명이상일 경우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 사건이 공정하게 위임되도록 한다.

[본조 신설 2013.10.16]

제21조 (소송 운영현황 공개) 공단은 홈페이지에 소송대리인 및 법률고문 위촉현황, 소송 대리 현황을 열람·검색이 용이하도록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0.16]

제6장 보칙

- 제22조 (중소격려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여 90% 이상의 승소 판결이 확정(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중재결정 등이 확정된 것을 포함한다) 되었을 때에는 승소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 1. 소가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단독사건 <개정 2020.02.03>
 - 2. 하급심에서 패소한 사건
 - 3. 소송 진행 중 직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경우 <개정 2020.02.03>
 - ② 제1항의 승소격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결사건 당 50만원으로 한다.
 - ③ 2명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며, 이경우 승소격려금은 균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4.30>

부 칙 <규정 제776호, 2006.0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진행 중인 소송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은 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규정 제826호, 2008.04.30.>

이 규정은 200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41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제규정 및 지침의 개정) ①~③ 생략

⑭ 소송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팀원"을 "직원"으로 한다.

① 35 생략

부 칙 <규정 제1007호, 2013.1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진행 중인 소송(확정판결까지 포함) 및 법률자문 위촉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160호, 2017.12.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법률 제14939호(2017.10.24.)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1266호, 2020.02.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88호, 2020.08.31.>

이 규정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67호, 2022.0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일체의 소송(확정 판결까지 포함)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424호, 2023.05.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일체의 소송(확정 판결까지 포함)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494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고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별표 3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부터 적용한다.

■ 소송업무처리규정 [별표 1](제11조제1항 관련)

착수금 지급 기준

소송물가액	산정기준	비고
1,000만원이하	소가×10/100	~100만원
1,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100만원+(소가-1,000만원)×10/100]	100만원~300만원
3,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300만원+(소가-3,000만원)×8/100]	300만원~460만원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460만원+(소가-5,000만원)×6/100]	460만원~760만원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760만원+(소가-1억원)×3/100]	760만원~3,460만 원
10억원초과	[3,460만원+(소가-10억원)×1/100]	3,460만원~

■ 소송업무처리규정 [별표 2](제5조제4항 관련)<신설 2013.10.16.>

소송대리 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표

법무법인명(변호사)	
소송건명	

	1		
평가부문	구분	배점	평가내용
	소송내용 파악 의 적정성	20점	·소송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유사사례(판례등) 확인 등 사건내용 검토가 충실한지 여부 ·쟁점사항 중 누락항목이 없는지 여부 등
소 송 수 행	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	30점	 변론 진행계획, 증거자료 확보방법 등 소송 수행계획이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당당변호사 이외에 법인의 전문팀 등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승소가능성
누 诗	담당변호사 구 성의 적정성	20점	 사건 담당변호사(파트너 변호사 및 실무 변호사)가 유사소송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담당변호사의 경력 등으로 보아 사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 파트너변호사의 경력 등으로 보아 소송을 총괄 수행하는데 적정한지 여부 * 실무변호사가 근무경력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여부 등
수임료의	적정성	30점	· 제안된 금액이 의뢰하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 (금액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지)

■ 소송업무처리규정 [별표 3](제14조제3항 관련)<개정 2013.10.16., 2020.8.31., 2024.12.31.>

법률고문 공모 평가기준

법무법인명(공모변호사)

구분	평가기준	배점			평점			
				20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5년 미만
	1. 법조경력 (변호사, 판사, 검사,	30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군법무관 경력 등)							
업무			50건 이상	40-49건	30-39건	20-29건	19건 이하	
수행	2. 법률자문 및 소송 실적	30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능력	조승 글닥 (최근 3년간)	30'=						
	3. 포상 실적 (최근 5년간)	5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자체	공공기관	
			5점	4점	3점	2점	1점	
	4. 징계 전력		없음	견책	과태료 (감봉)	정직	제명 (강등)	
윤리성	(최근 5년간 변호사법 및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가장 중한 징계 기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종합	5. 종합 평가 (지원동기, 직무수행 3	30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평가	계획서, 역량 등)							
	합계	100점						

평가 위원	성명:	(서명)
-------	-----	------

■ 소송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4항 관련)<신설 2013.10.16.>

소송대리 수임 제안서

본 법무법인(변호사)은 00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 수임을 제안 합니다.

1. 법무법인(변호사)의 소개

2. 소송수행 계획

- 가. 사건의 개요
- 나. 이 사건의 쟁점
- 다. 대응방안

3. 숭소가능성

4. 업무범위 및 소송비용

- 가. 업무범위
- 나. 소송비용
- (1) 착수금 :
- (2) 성공보수금:

5. 담당변호사 소개

- 가. 전문분야
- 나. 학력 및 경력
- 다. 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

6. 기타 참고사항(소송수행사례 등)

■ 소송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5항 관련)<개정 2013.10.16.>

소송위임계약서(민사, 행정 등)

위임인:

수임인 : 변호사 / 법무법인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 건 명	
당 사 자	상 대 방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_____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수임인은 이를 수임한다.
- 제2조 [위임한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 사무로 한다.
- **제3조 [수권범위]**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수임인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 [자료제공 등]**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착수보수]

- ①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 금____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 사무에 착수한 후,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위임인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임인과 수임인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수임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위임인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임인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위임인과 수임인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수임인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위임인을 위하여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수임인이 정하고 있는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반환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 ① 전부 승소한 경우 : 금_____원 (부가가치세 별도)
- 일부 승소한 경우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_____%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 ③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 비율을 정한다.
-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 ② 수임인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 ③ 수임인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 ④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 다. 전항 제1호 사유 중 위임인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락,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수임인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위임인과 수임인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비용부담]

-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위임인이 부담한다.
- ② 위임인은 제1항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____원을 예치한다.
- ③ 출장 일당으로 1일 금____원을 비용 발생 때 지급한다.
- ④ 전항의 비용은 제2항의 예치금 중에서 충당할 수 있다.
- 제9조 [계약해지] 위임인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수임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 제10조 [통지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위임인에게 통지하

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지급의 지체]

- ① 위임인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수임인은 신속하게 위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자료의 보관책임]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위임인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임인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보장]

- ① 수임인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임인은 위임인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 수임인은 신속하게 위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 또는 당사자의 인 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임인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 [비밀유지] 수임인은 업무상 취득한 위임인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위임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특약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고, 위임인과 수임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위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수임인 : 변호사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소송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제5조제5항 관련

소 송 위 임 장				
사 건				
원 고				
피 고				
	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 1 다음 표시 권한을 위임한다.			
수 임 인				
위임내용	 일체의 소송행위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반소,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또는 취하 변제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대리공탁 및 공탁물과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담보취소 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복대리인의 선임 			
위임인	200 년 월 일 주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귀중			

※이 서식은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소송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제14조제3항 관련)<개정 2013.10.16., 2017.12.4.>

법률고문 직무수행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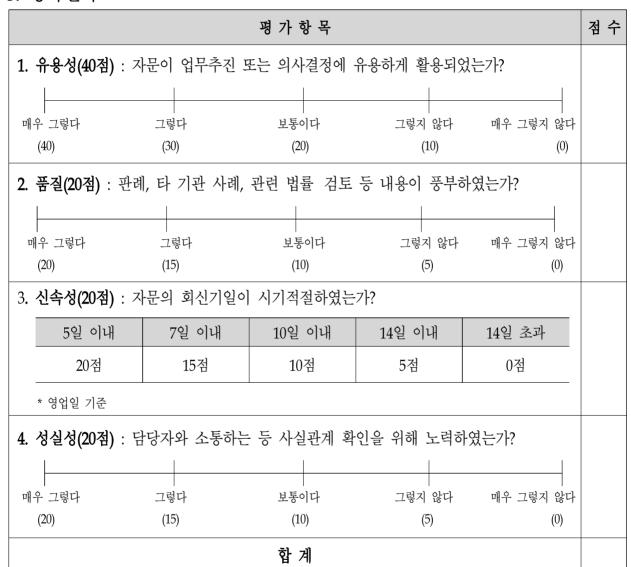
본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법률고문 위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자기 소개 	
가. 전문분야	
나. 학력 및 경력	
다.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경험 등	
2. 업무수행 계획	
3. 기타 참고사항	

■ 소송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제14조제5항 관련)<개정 2013.10.16., 2020.08.31., 2024.12.31.>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 1. 평가부서 :
- 2. 평가대상 :
- 3. 평가결과



4. 기타 자문변호사에 대한 의견(자유기술)

■ 소송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제16조제2항 관련)

법률자문일지

자 문 년월일	자문의뢰부서	자문건명	자문내역	비고

※ 법률자문일지를 법률 자문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 소송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제18조 관련)<개정 2013.10.16., 2017.12.4.>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로 서 아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 시 해촉되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1. 금품수수(授受)나, 부당한 알선・청탁
- 2. 공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20 . . .

서 약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소송업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제21조 관련)<개정 2013.10.16., 2017.12.4.>

법률고문 정보공개 동의서

	법무법인명(성명)	
법무법인 (변호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1. 고문변호사 위촉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및 자문실적 공개내용 2. 소송사건 수임 현황 및 소송실적 3.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 법무법인(변호사)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법률고문으로 위촉됨에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소송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법무법인(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